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0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제4항에 따라 우체국 이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설치장소 이전 운영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이전

가. 청사이전내역

국명 (총괄국)	관서 등급	청사주소		업무개시일 [이전일]
		현청사	이전청사	
임실삼계 (임실)	6급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충효로 128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충효로 1293	'25.1.24.(금) ['25.1.23.(목)]

*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이전일 당일 업무 중지

나. 이전사유 : 노후우체국 준공으로 인하여 우체국 이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이전 및 업무시작 익일(2025.1.31.)까지 유효